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출신의 최기찬 의원입니다.

이렇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공동주택 사업 시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는 산업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산업부지 확보비율이 적용되어 서울시민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위한 학교나 병원의 설립시 이 비율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표2의 제2호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제35조제1호)와 관련, 산업부지 확보비율 완화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별표2의 제2호라목을 신설, 제3호다목에 따른 산업시설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비영리 기관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한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1단계인 10%를 하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필요한 의료 및 교육 시설을 통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의원과 공동발의해 주신 채인묵 의원님, 찬성해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을 헤아려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